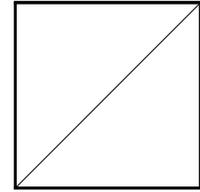


공 개



의안번호	제 454 호
의 결 연 월 일	2020. 12. 22. (제 22 차)

의
결
사
항

은행지주회사의
자회사등 상호간 신용공여 한도 초과사유 인정안

금융위원회회의 안건

제 출 자	위원장 은 성 수
제출 연월일	2020. 12. 22.

1. 의결주문

은행지주회사의 자회사등 상호간 신용공여 한도 초과사유 인정을 <별지>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“코로나 19 대응을 위한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”의 일환으로 은행지주회사의 자회사등 상호간 신용공여 한도 초과를 한시적으로 허용함으로써, 코로나19로 인한 긴급한 자금수요 발생 시 자회사간 신용공여를 통해 자금을 원활히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

3. 주요골자

「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」 제15조 제8호에 따라 <별지>와 같이 ‘은행지주회사의 자회사등 상호간 신용공여한도’ 초과사유를 한시적으로 인정함

4. 참고사항

- 관련 법규: 「금융지주회사법」 제48조, 「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」 제27조, 「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」 제15조 등 (붙임' 참고)

(별지)

은행지주회사의 자회사등 상호간 신용공여 한도 초과사유 인정

“금융위가 급격한 경제여건의 변화 등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는 경우로서 자회사 등이 자신이 자회사 등으로 있는 금융지주회사의 다른 자회사 등에 대한 신용공여로 인해 영 제27조제4항 각 호의 한도를 자기자본의 10%p 내에서 초과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” 라고 규정한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 제15조 제8호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.

- 코로나 19로 인한 신용경색 해소를 위하여 ‘21.1.1.부터 ‘21.6.30. 기간 중 은행지주회사의 자회사등 상호간 신용공여가 이루어지는 경우
 -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27조 제4항 각호의 한도를 초과하더라도 10%p 이내에서 한도 초과를 허용

□ **금융지주회사법**

제48조(자회사등의 행위제한) ①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은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. 다만, 당해 자회사등이 새로이 금융지주회사에 편입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(생략)
2. (생략)
3. 당해 자회사등이 속하는 금융지주회사의 다른 자회사등에 대한 신용공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신용공여

□ **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**

제27조(자회사등의 행위제한) ①법 제48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“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“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

1. 다음 각 목의 사유로 신용공여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가-다. 생략
 - 라. 제22조 제2항 ……제7호의 사유로 인하여 법 제4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공여한도를 초과한 경우
- ②자회사등이 제1항제1호 및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사유로 신용공여한도를 초과하거나 다른 자회사등의 주식을 소유한 때에는 그 날부터 2년 이내에 한도를 초과한 신용공여를 회수하거나 주식을 처분하여야 한다. 다만,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
- ④법 제4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24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회사등은 당해 자회사등이 속하는 금융지주회사의 다른 자회사등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한도를 초과하는 신용공여(제24조제2항 각호의 구분에 의한 신용공여 및 제1항 제2호 라목에 의한 출자를 말한다)를 할 수 없다.
 1. 다른 자회사등에 대한 신용공여 : 당해 자회사등의 자기자본(제24조제3항 각

- 호의 구분에 의한 자기자본을 말한다. 이하 이 항에서 같다)의 100분의 10
2. 다른 자회사등에 대한 신용공여의 합계액 : 당해 자회사등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20

제22조(신용공여한도의 초과사유) ②법 제45조 제1항 제2호의 사유로 동일 차주에 대한 금융지주회사등의 신용공여의 합계액이 금융지주회사등의 자기자본의 순합계액의 100분의 25를 초과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.

- 1.-6. (생략)
7. 기타 급격한 경제여건의 변화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금융지주회사등의 귀책사유없이 신용공여한도를 초과하였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

□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

제15조(신용공여한도의 초과사유) 영 제22조 제2항 제7호에서 “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“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.

- 1.-7. (생략)
8. 금융위가 급격한 경제여건의 변화 등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는 경우로서 자회사 등이 자신이 자회사 등으로 있는 금융지주회사의 다른 자회사 등에 대한 신용공여로 인해 영 제27조제4항 각 호의 한도를 자기자본의 10%p 내에서 초과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	금융위원회	금융감독원
소관부서	금융정책과	금융그룹감독실
연 락 처	02-2100-2843	02-3145-8210